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한재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성욱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187,00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의 사설서버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00,187,008원을 송금받고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



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로 접속되도록 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0,187,008원을 송금 받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함) 9, 1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입건 전 조사 지시,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G 명의 H은행 계좌), 수익금 특정편집 거래내역, 게임 수익금이 G 명의 타계좌로 출금된 편집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15)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몰수대상 금융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행 관련 2024.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G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원금 명목 금원 중 합계 300,187,008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6

판사 김상우 _____